

# 서 면 답 변 서

질의의원	강 석 주 의원	소 속	평창군 의회
답 변 자	평 창 군 수 (축산경영과장)	일 자	질의 : 1999년 11월16일 답변 : 1999년 11월17일
회 의	제7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p>&lt;질의요지&gt;</p> <p>○ 초지조성허가(종부리)와 관련한 산림불법훼손 경위</p>			
<p>&lt;답변요지&gt;</p> <p>○ 초지조성허가(종부리)와 관련한 산림불법훼손 경위 - 불임과 같습니다.</p>			

## -초지조성허가와 관련한- 산림불법훼손 경위

### □ 초지조성허가 현황

- 수허가자 : 평창군 평창읍 중리 315- 1 조 성 호
- 허가지역 :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산23- 1번지의 4필지
- 허가면적 : 75,305m<sup>2</sup>(7.53ha)
- 허가일자 : '99. 5. 29 (평창군허가 제99-1호)

### □ 추진경위

- 초지조성 허가신청 : '99. 4. 12
- 1회방문민원 실무종합심의 : '99. 4. 13
- 현지적지조사 : '99. 4. 19 (축산,임업,환경,평창읍 합동)
- 보전임지 전용협의 : '99. 5. 24(임업경영과)
- 초지조성 허가 : '99. 5. 29
- 산림형질변경 원상복구비 예치 : '99. 9. 2(보증보험 증권사)
- 착수신고 : '99. 9. 2(측량성과도 첨부 : 평창측량)
- 지도확인발급을 위한 현지출장 : '99. 9. 8 (축산,산림합동)
  - 경계측량 및 경계지점 표시가 되지않아 경계측량 실시촉구 및 작업중단 지시 (소나무 약50본 굴취작업상태)
  - 경계측량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토록 수허가자에게 지도
  - 지도확인중 미발급
- 불법훼손 주민민원 제보 : '99. 10. 20 (평창읍 종부리 이해균)
  - 현지확인 실시(축산,산림,재무, 수허가자, 피해농가)
  - 소나무 약400본 굴취(굴삭기 3대, 인부6명)
  - 작업중지 및 경계측량 촉구
- 경계측량 의뢰 : '99. 10. 22 (대한지적공사 평창출장소)
- 산림불법훼손 동향보고 : '99. 10. 27 (문서번호51565- 121)
- 경계측량실시 : '99. 10. 28, 11. 1 (2일간)
  - 축산,임업,수허가자,피해농가 입회
- 측량성과도 발급 : '99. 11. 5 (대한지적공사 평창출장소)
  - 현황측량성과도2부, 경계복원측량성과도 1부
- 측량성과도 접수 : '99. 11. 5 (임업경영과 사본송부)
  - 산림불법훼손면적 : 6호 - 10필지 - 24,160m<sup>2</sup>(2.41ha)

○ 산림불법훼손지역 현황

(단위 : 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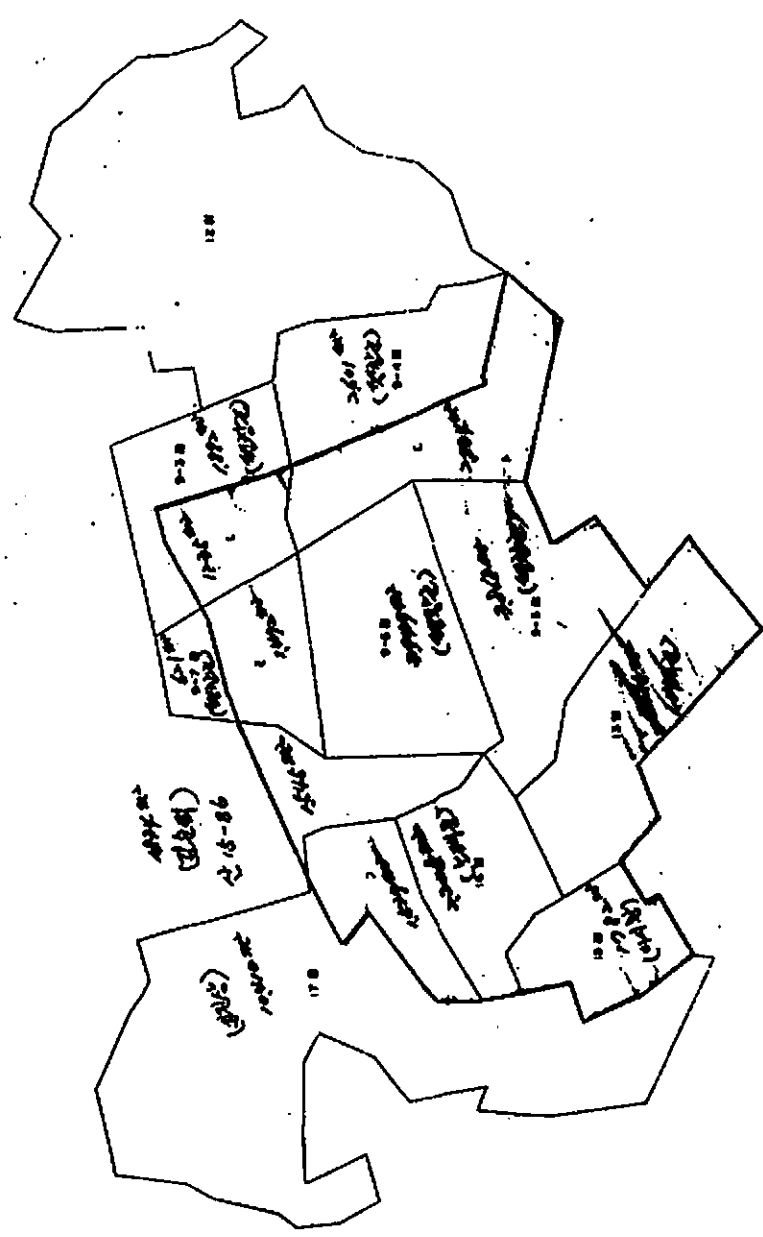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불법 훼손면적	비고
주소	성명					
계	6호	10필		41,508 (4.15ha)	24,160 (2.41ha)	
평창읍 여만리	이해균	13	임	3,855	3,855	
평창읍 하리	평창군	9-3	전	3,117	1,235	
		9-4	전	5,335	2,734	
		9-5	전	3,868	3,868	
		9-6	전	3,947	3,947	
		9-7	전	2,093	1,472	
	소계	5필		18,360	13,256	
충북 제천시	조태웅	16	임	2,205	2,205	
평창읍 중리	김순석	산15-86	임	3,379	1,545	
평창읍 중부리	이시환	15	전	1,782	1,782	
경기도 화성군	김진상	17	전	11,927	1,517	

# 현상측량성곽도

(표준도: 1:5000)	(표준도: 1:5000)	(표준도: 1:5000)	(표준도: 1:5000)	(표준도: 1:5000)	(표준도: 1:5000)	(표준도: 1:5000)	(표준도: 1:5000)
프로젝트	현상측량	현상측량	현상측량	현상측량	현상측량	현상측량	현상측량
17번지	17번지	17번지	17번지	17번지	17번지	17번지	17번지
1100번지	1100번지	1100번지	1100번지	1100번지	1100번지	1100번지	1100번지
1999년 11월	1999년 11월	1999년 11월	1999년 11월	1999년 11월	1999년 11월	1999년 11월	1999년 11월
지리정보	지리정보	지리정보	지리정보	지리정보	지리정보	지리정보	지리정보

현상표시	
형태	면적
1-1	1100
1-2	1100
1-3	1100
1-4	1100
1-5	1100
1-6	1100
1-7	1100
1-8	1100
1-9	1100
1-10	1100
1-11	1100
1-12	1100
1-13	1100
1-14	1100
1-15	1100
1-16	1100
1-17	1100
1-18	1100
1-19	1100
1-20	1100

면적표시	
지번	면적(m <sup>2</sup> )
17	10410
17-1	1817
17-2	11927
17-3	1083
17-4	1236
17-5	3117
17-6	2601
17-7	2734
17-8	5333
17-9	481
17-10	1672
17-11	2088
17-12	1100
17-13	1100
17-14	1100
17-15	1100
17-16	1100
17-17	1100
17-18	1100
17-19	1100
17-20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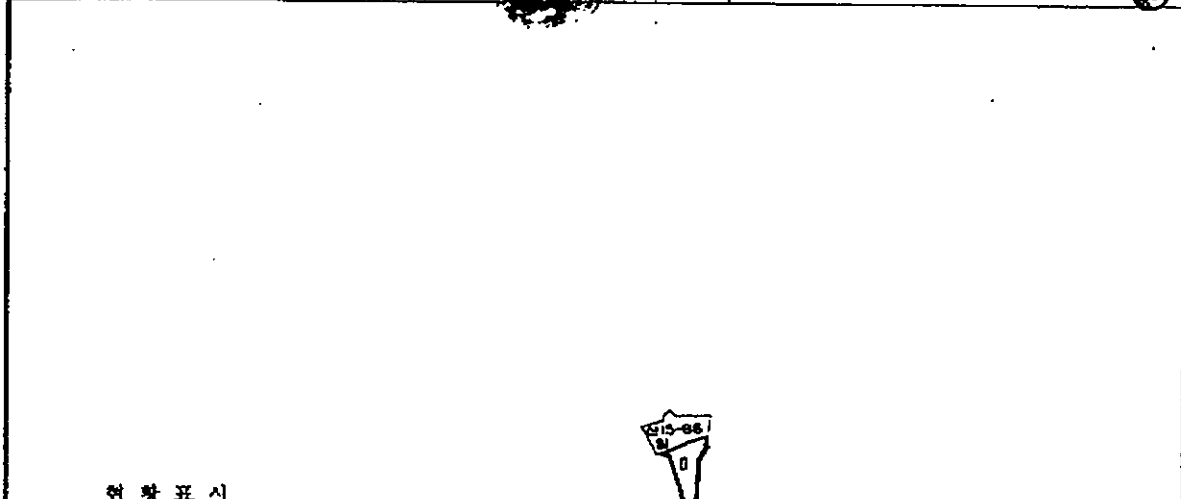


[별지 제22호사건]

# 현황측량성과도

교부번호:           번

토지소재	평창군 평창읍 평창면 평리동 15-86번지 2필	축적	$\frac{1}{6000}$
측량자	1999년 11월 일	측량도자	1999년 11월 일
	지적기사 김정주	자적	급



현황표시

번	명칭
	현황표시
	인화

면적표시

지번	부소	면적(m <sup>2</sup> )
15-86		1934
	0	1545
15-86		3379
	인화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하실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일

대한지적공사 강원도 지사 평창군 출장소장

비고 이 측정정보는 측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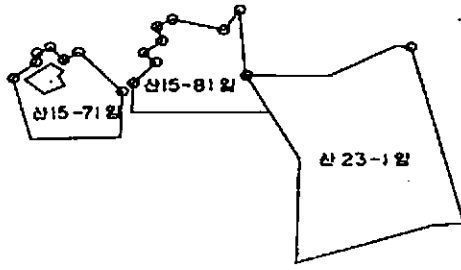
23125-11-21 199  
이 측량성과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으며, 측량성과에 다목적 10mm(측수비율기) 경우에는 지적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위원회

[별지 제22호서식]

# 경제복원측량성과도

교부번호: 529 번

토지소재	시 평창군 평창읍 등부동 산15-71번지 3필	축적	$\frac{1}{6000}$
측량자	1999년 11월 2일	측량도자	1999년 11월 2일
	지적기사 금정주섭	측량도자	지적공인기사 장필영



현황표시

별저	명칭
○	경계표지
	원자

면적표시

지번	부호	면적(m <sup>2</sup> )

측량결과도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2일

대한지적공사(주) 원도 기사 평창군 출장소장



비고 이 측량성도는 축적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3135-02111인  
1985. 9. 23 인인

이 측량성과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으며, 측량결과에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지적위원회

197mm(복수미동지)

문서번호	51565-12/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99. 10. 27

담 당	과 장	소 장	부군수	군 수
협조		산림보호담당 임업경영과장		

\*경희대학교 산림경영학과  
 산림경영과 교수  
 조재민, 김민, 이영, 송영, 황  
 조재담장 양호관

-초지조성허가와 관련한-  
**산림불법훼손 동향보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과)

-초지조성허가와 관련한-  
산림불법훼손 동향보고

□ 초지조성허가 내역

- 수허가자 : 평창군 평창읍 중리 315-1 조 성 호
- 허가지역 : 평창군 평창읍 중부리 산23-1번지의 4필
- 허가면적 : 75.305m<sup>2</sup> (7.53ha)
- 허가일자 : '99. 5. 29(평창군 허가 제99-1호)
- ※ 축산업경험이 없는 신규조성자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력조성 대상임

□ 추진경위

- 초지조성 허가신청 : '99. 4. 12
- 1회방문민원 실무종합심의 : '99. 4. 13
- 현지적지조사 : '99. 4. 19 (축산, 임업, 환경, 평창읍 합동)
- 보전임지 전용협의 : '99. 5. 24 (임업경영과)
- 초지조성 허가 : '99. 5. 29
- 산림형질변경 원상복구비 예치 : '99. 9. 2 (보증보험 증권사)
- 착수신고 : '99. 9. 2 (측량성과도 첨부 : 평창측량)
- ※ 착수신고 :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신고토록 되어있음.

□ 불법훼손 내용

- 현행지침상 초지조성사업 착수신고후 관계공무원의 현지지도확인증을 발급받은후 사업을 착수토록 되어 있으나
- '99. 9. 2일자로 초지조성사업 착수신고서를 접수하고 9. 8일자 축산산림합동으로 관계공무원이 지도확인증 발급을위하여 현지출장한바, 측량도면대로 경계지점이 표시되지 않아 작업중단 지시와함께 명확한 경계측량과 경계표시후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도하였으나,
- 초지조성 수허가자가 본인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가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잡관목제거, 개간, 소나무굴취작업등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항임



○ 산림불법훼손 예상지

(단위 : 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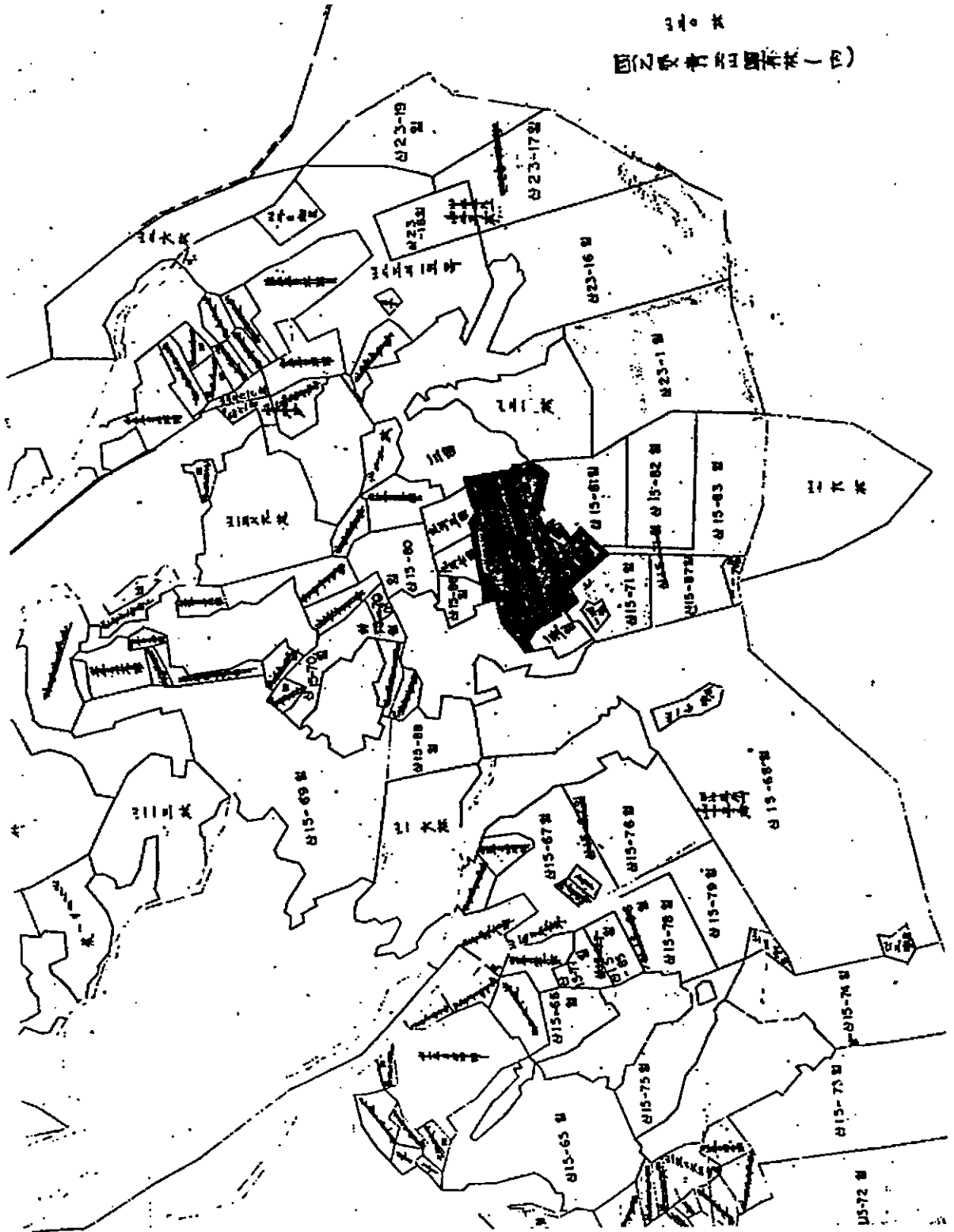
토지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불법 예상면적	비고
주소	성명					
계	4호	6필		22,589 (2.25ha)	20,210 (2.02ha)	
평창읍 여만리	이해균	13	임	3,855	3,855	
평창읍 하리	평창군	9-4	산전	5,335	5,335	
		9-5	산전	3,868	3,868	
		9-6	산전	3,947	3,947	
충북 제천시	조태웅	16	임	2,205	2,205	
평창읍 중리	김순석	산15-86	임	3,379	1,000	

□ 사후대책



- 지적공사 불법훼손지 측량신청 : '99. 10. 22
- 측량실시 예정일자 : '99.10. 28
- 불법훼손지역의 명확한 경계 및 현황측량후 불법행위에 대하여 임업  
경영과에서 조사할수 있도록 조치
- 불법훼손지역에 대한 원상복구지시 및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 경계측량후 불법훼손사실이 인정되면 초지조성허가 취소할 계획임.

붙임 : 1. 산림불법훼손 예상지 임야도면 1부  
2. 산림불법훼손 예상지역 전경사진 1부      끝.

340 米  
 圖之數有田園森林(一四)



# 출장복명서

결	담당자	담당	과 장	소 장	부군수
계		조성호	전결		

1. 출장기간	'99. 9. 8
2. 출장지역	평창읍 중부리
3. 수명사항	초지조성 지도확인
4. 복명사항	

- 수허가자 주소 : 평창군 평창읍 중리 315-1  
성명 : 조 성 호
- 초지조성예정지 : 평창군 평창읍 중부리 산23-1번지의외4필
- 허가증번호 : 평창군 허가 제99-1호('99. 5. 29)
- 초지허가면적 : 75,305㎡ (7.53ha)
- 지도확인자 : 축산경영과 축산7급 김용원, 임업경영과 임업7급 이건훈
- 지도확인사항
  - '99. 9. 2일자 초지조성사업 착수신고접수에 의하여 '99. 9. 8일자 축산, 산림합동으로 현지지도확인한바, 경계측량이 실시되지 않아 명확한 경계를 알수가 없어 경계측량후 착공토록 농가지도
  - 원활한 경계측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허가지역내에서 부분적으로 잡관목 제거토록 지도
  - 허가청과 사전협의없이 초지조성지내 소나무일부를 굴취작업한 사실이 있어 작업을 중단하도록 농가지도
  - 경계측량실시시 축산,산림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토록하고 지도확인증 발급후 착공토록 농가지도

붙임 : 초지조성지도확인증 1부.    끝.

상기과같이 출장하였기 복명합니다

1999년 9월 8일

출장자 직명 : 지방축산주사보    성명 : 김 용 원 

# 초지조성지도확인증

수허가자	성명	조성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평창군 평창읍면 경리 215-1번지			
초지조성예정지	평창군 평창읍면 동계리산 22-1번지의 4필지				
허가증번호	평창군 허가제 99-1호 (1999년 5월 29일)				
면적(ha)	계	초지조성지	진입도로		
	25,705㎡ (7.43)	74,205㎡ (21.43)	1,000㎡ (0.1)		
초지조성지 지장목별적	별채 면적 1.53 ha (25,705㎡)	별채 면적	수종	계	소나무
			종재적		10㎡
			이용가능여부		
조립실행	수종	계			
	면적				
	본수				
경계표시 적정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비고(의견)	* 99.9.8일자 초지조성영용허가 * 해당지 경계측량 이의사건 재심판결 * 해당지 경계측량 이의사건 재심판결	
				* 해당지 경계측량 이의사건 재심판결 * 해당지 경계측량 이의사건 재심판결	
지도사항	* 경계 표시를 조치함. * 사업필지 측량 결과 * 나무그늘 넓게 하기 * 1%의 수평선으로 받침 * 초지허가 부여내 목외림 임목조치 안함 (허가점과 현의림이 혼동하여 처리함)				
첨부 : 작업구역 표시도 1부  초지조성 작업착수신고에 대하여 위와같이 확인함.					

장관자	장관	과장	소장	부관수
(인)	조관자	전결		[인]

1999년 9월 8일

확인자 직명 : 지방국산과장      성명 : 김 용 원  
 직명 : 지방인명조사관      성명 : 이기 원

# 측량 성과도

토 지 소 재	평창군 평창읍 중부리 산15-71번지 외 5필지		축척 : 1/6,000
측 량 일	1999년 8월 5일	측 량 자	측지기사 1급 손 현 구
작 성 일	1999년 8월 16일	작 성 자	측지기사 1급 박 경 원

(작업구역 표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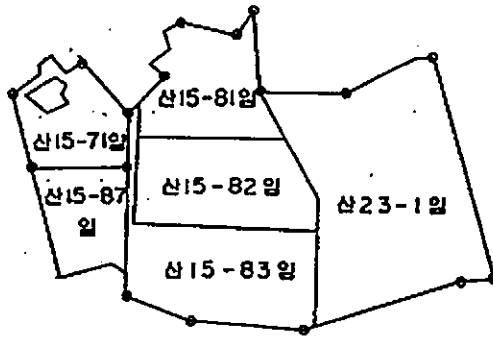


표	시	영	청	비	고
—		지	적	선	
		현	황	선	
		도	로		
		건	물		
○		확	인	점	

건설부 측량업등록제 03-2059호  
**평창측량설계**  
 대표 최 장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0374-333-3490



"HAPPY 700 평창군입니다"

# 평 창 군



우232-8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357- 6/ ☎ (0374)330- 1338/ FAX330- 1368  
처리부서: 축산경영과(1층) 과장: 김재남 지방축산주사: 조태형 담당자 : 김용권

문서번호 축경51565- 699

시행일자 1999. 9. 3. (년)

경유  
받은 입업경영과장

참조

취급		
보존		김용권
부군수		
소장		
과장	전결	
기안	김용권 	축산지도담당 조태형 
		협조

제목 '99초지조성 허가지 지도확인 발급협조

1. 축경51565- 466('99. 5. 29)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호에의하여 허가한 사업자로부터 초지조성 사업착수신고서가 접수 되어 현지도확인증을 발급코자하오니 해당사무 담당직원 현지확인 매목 및 경계점인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도확인일자 : '99. 9. 7(화요일)

나. 축산경영과 : 초지조성시 초지립 존치여부 및 경계확인

다. 입업경영과 : 경계점인 및 매목조사

조성자		소재지	지번	지목	허가면적	금회확수 면적	비고
주소	성명						
계			5필지		75,305	75,305	
평창 중리	조성호	평창 중부리	산23-1	임	30,669	30,669	
			산15-81	임	9,866	9,866	
			산15-82	임	12,384	12,384	
			산15-83	임	15,336	15,336	
			산15-71	임	7,050	7,050	

붙임 : 초지조성 지도확인증 서식 1부.

끝.

## 축 산 경 영 과 장

## 초지조성지도확인증

수 허가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초지조성예정지	평창군 읍면 리 산		번지의 필				
허가증번호	평창군 허가 제 호 (1996년 월 일)						
면적 (ha)	계	초조성지	진입로	부설	존치	요조지	기타
	ha	ha	ha	ha	ha	ha	ha
초조성지 지장목재 별	별재 면적	ha	별재	수종	계		
			지	총			
			적	계			
조림실행	수종	계					
	면적						
	본수						
경계표시 적정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조정		비고(의견)				
지도사항							
<p>첨 부 : 작업구역 표시도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초지조성작업 착수신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함.</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0px;">             1998 년    월    일         </div> <p style="text-align: center;">             확인자 직                      성명                      ( 인 )                                   직                                      성명                      ( 인 )         </p>							

## 초지조성사업 착수신고

초지조성 허가번호	99-1	허가 일자	1999년 5월 29일
초지조성 대상지	평창군 평창읍(면) 중부리 산27-1번지의 4필		
허가 면적	7.3헥타 (15,305㎡)	금회 착수 면적	7.3헥타 (15,305㎡)
조성 완료 예정일	1999년 11월 30일		
조성권자	주소	평창군 평창읍 중리 35-1 206호 TEL: 333-7460	
	성명	조성호	

상기와 같이 귀군으로부터 허가받은 초지조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착수코저 신고합니다.

붙임 : 1. 초지조성 소요물량 및 사업비 투자내역 1부.

2. 측량 성과도 1부 끝.

1999.

선경	하장	7월	결지(공란)		
접수일시	1999. 9. 29.	시 분	번호		
처리과	농업사	장	장	이장	2006

신고자 주소 : 평창군 평창읍 중리 35-1 206호

성명 : 조성호

평창군 수귀하



### 초지조성 소요물량 및 사업비 투자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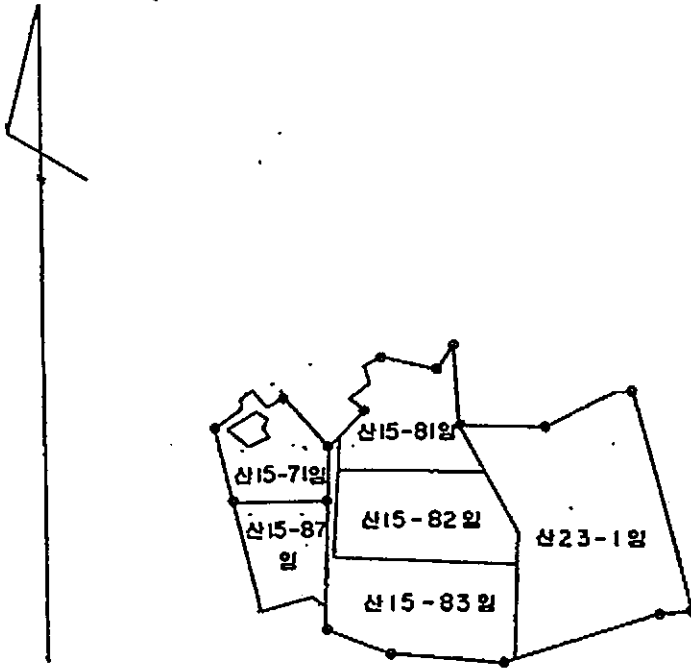
( 단 위 : 천 원 )

구분 세부 사업명	소요물량	투자계획	비고
계	17.53 ha		
장애물제거	217 명	10.850	인건비 50.000원 (男)
살초제	60 L	1.005	
종자	300 kg	1.395	
농용식회	15,000 kg	1.005	
비료	1,500 kg	2.873	
시비, 파종	112 명	3.360	노임 30,000원 (女)
목도			
측량비			
목책설치			
전기목책기			
기타			

# 측량 성과도

토지소재	평창군 평창읍 중부리 산15-71번지 외 5필지		축척 : 1/6,000
측량일	1999년 8월 5일	측량자	측지기사 1급 손현구
작성일	1999년 8월 16일	작성자	측지기사 1급 박경환

측량실  
 손현구  
 박경환



표시	명칭	비고
—	지적선	
	현황선	
	도로	
	건물	
○	확인점	

건설부 측량업등록 제03-2059호  
**평창측량설계**  
 대표최장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0374-333-3490



# 인. 허가보증보험증권

대한민국정부  
인 지 세  
200원  
효력세무서  
인적용인 100-01호

증권번호 제 412-051-199900000748 호

보험 계약자	조성호	피보월자	581-83-90004 평창군수
보험가입금액	금 壹仟參百六拾參萬參仟五百九拾 圓整 ₩13,633,590-		보험료 ₩136,330-
보험기간	1999년 06월 08일 부터 2000년 06월 07일 까지 ( 366일간 )		
보증내용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		
특별약관	생 각		
특기사항	※해당사항없음		
<b>행정행위내용</b> 종류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조건      산림법 제91조 동법시행규칙 제92조 인.허가기간    1999년06월08일부터 1999년12월31일까지 인.허가장소    평창군 평창읍 정부리 신23-1 외 4필 인.허가번호 인.허가 또는 영입보증금액 ₩13,633,590-			

우리 회사는 인.허가보증보험 보증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허가받은 권리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이 예치한 보증보험증권은 양수인 명의의 신규증권으로 교체하여 허가청에 예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증권발급부서: 412 전주지점  
 부    사    장: 최병선  
 담    당    자: 남영복  
 경    화    번    호: 0371-745-0012  
 주    소: 강원 원주시 단계동  
 875번지 SK물류종합빌딩 5층  
 취급 대리점: KB증권

1999년 09월 0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장 183 34 큰

※ 대표이사 사장의 서명이 인쇄되지 아니하였거나 보증증권상와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정당한 것은 무효이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이외의 기재내용이 정당한 경우에는 증권발급부서에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이 내용이 주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인·허가보증보험

## 보 통 약 관

### I. 피보험자 관련사항

-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영칭여허를 불문하고, 목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이하 "인·허가조건"이라 합니다)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의 청구)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보험금 청구 문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 ②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 ]위 [ ]의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납부통지서(사본) 또는 변상명령서(사본)로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 (보험금 지급액) [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으로 합니다.
 

[ ]위 [ ]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시기)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II. 보험계약자 관련사항

- (보험료)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내어야 합니다.
- (보험료 환급) [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돌려드릴 보험료는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인·허가조건에 따른 의무가 소멸한 때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최저보험료가 경과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보다 많은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 III. 공통사항

- (손해의 조사)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상 및 대위) [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기집니다.
 

[ ]피보험자는 위 [ ]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분쟁의 조정)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회사와 관할법원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보험료 분할납입)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한 방법에 따라 보험기간안에 연간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회분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여야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평 창 군

☎ 232-800/강원 평창군 평창읍 여말리 357 / ☎ (0374)330 - 1338 / 전승330 - 1368  
 처리부서 : 농업기술센터축산경영과 축산지도팀 담당자 : 안 재 구

문서번호 축경 51565 - 502

시행일자 1999. 6. 10

반송 : 받는곳 참조

취급	우편,제송	군	수
보존	10년	이 영복	
부군수			
소장	전 결		
과장	김민		
기안	안재구	협조	

제목 : '99 초지조성 허가에따른 산림 형질변경 복구비 예치통보

1. '99 초지조성 허가된 사업장에 대하여 산림의 형질변경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있어 알려드리니 기한내에 납부하시고 영수증사본 지참 착수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복구비 예치 내역

사 업 자		초 지 허 가 내 역			부 과 근 거	부과 금액 (원)	납 부 기 한	납부장소
주 소	성 명	위 치	지 번	면적(㎡)				
평창후평리 376-2	김 재성	후평리	산47-1외 2필지	47,111	산림법제 91조및 동법시행 규칙92조	8,529,210	'99. 7.7일	평창군청
평창중리 315-1 206	조 성호	중부리	산23-1외 4필지	75,305		13,633,590	"	"
망덕계촌4리	서 광춘	계촌리	산851	18,347		3,321,630	"	"
계	3호		9필	140,763		25,484,430		

\* 해당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중권도 가능함.

붙임 : 개인별 복구비 예치 통지서 각1부 끝.



평 창 군 수

받는곳 : 평창읍 후평리 김재성의2호(조성호,서광춘)

# 복구비에치통지서

번호 제 호

- 0. 주소 : 평창읍 중리 315-1
- 0. 주민등록번호 :
- 0. 성 명 : 조 성 호
- 0. 부담총액 : 13,633,590원
  - 1. 적지복구비
    - 가. 소재지: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산23-1의4필
    - 나. 면적 : 75,305m<sup>2</sup>
  - 2. 예치할 금액 : 13,633,590원
  - 3. 납부기일 : '99. 7. 7일한
  - 4. 납부장소 : 평창군청

산림법 제 9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구비 예치할 것을 통보합니다.

1999년 6월 8일

평 창 군 수

※ 단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시는 허가기간을 99. 6. 8- 99. 12. 31일로, 보험기간을 99. 6. 8- 2000. 6. 7일로 증권을 발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영 수 증

번호 제 호

- 0. 주소 : 평창읍 중리 315-1
- 0. 주민등록번호 :
- 0. 성 명 : 조 성 호
- 0. 적지복구비 : 13,633,590원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1999년 월 일

평 창 군



**민원서류**  
처리기함: . . .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평창군**

우 232-800/강원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357 / ☎(0374)330-1338/전송330-1368담당자:안재구  
처리부서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경영과 축산지도 담당주사 : 신 상 군

문서번호. 축산 51565 - 466

시행일자 1999. 5. 27

( 제 1 안 )

발음 : 평창읍 중리315-1 206호

조 성 호

취급	우편,계송	군	수
보존	10년	가리군	
부군수	전 결		
소장	안재구		
과장	신상군		
기안	안재구	축산지도담당	협조

제목 : 초지조성 허가

1. 축산 51565 - 334 (98.4.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한 초지조성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현지조사결과 초지조성지로 적합하여 초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빠른 시일내 허가 대상지 경계측량후 경계표시하고 성과도를 첨부하여 착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초지조성 허가증및 착수신고서 각1부 끝,  
유의사항 1부 끝,  
( 제 2 안 )

발음 : 초지조성 허가사항 통보

1. 축산 51565 - 334 (98.4.13)호와 관련입니다.

2. 평창읍 중리315번지 조성호가 제출한 초지조성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초지법 제5조규정에 의하여 붙임과같이 허가하였기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에 착오없도록 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산림과장은 등 초지허가에따른 사업추진과정의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초지조성 허가증 사본 1부 끝.




**평창군수**

발신곳 : 산림과장, 평창읍장, 평창축협장.



(허가번호 제 99- / 호)

# 초지 조성 허가증

성 명	조 성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평창군 평창읍 중리 315-1 206호					
조성 목적	목축업 경영					
조성 기간	1999. 6. 1 부터 1999. 12. 20 까지					
허가 면적	개량 목초 재배지	사료작물 재배지	축사 및 부대시설	진 입 도 로	기 타	계
	74,305 m' (7.43) ha	m' ha	1,000m' (0.1)ha	m' ha	m' ha	75,305 m' (7.53) ha
인 차 별	1999 년	2000 년	2001 년	조 성 방 법		
조성 계획	7.53 ha	ha	ha	불경운 조성		
허가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 착수시는 착수 신고서를 즉시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2. 사업완료시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3.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재반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조성 관리하여야 합니다.</li> </ol>					
<p>초지법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초지 조성을 허가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9. 5. 29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평 창 군</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필지별 허가내역>**

(단위 : m<sup>2</sup>)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허가 면적	허가내역				
					목초 재배지	사료작 물재배	축사.부 대시설	진입도 기타	계
평창 중부리	산23-1	임	30,669	30,669	30,669				30,669
" "	산15-81	임	9,866	9,866	8,866		1,000		9,866
" "	산15-82	임	12,384	12,384	12,384				12,384
" "	산15-83	임	15,336	15,336	15,336				15,336
" "	산15-71	임	7,050	7,050	7,050				7,050
계	5 필		75,305	75,305	75,305		1,000		75,305

## 유 의 사 항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에는 허가 취소 ( 초지법 제12조 제1항 1호 )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 하였을때는 사실확인후 허가취소 ( 초지법 제12조 제1항 2호)
  3. 허가 조건을 위반한때에는 허가 취소 ( 초지법 제 12조 제1항3호)
  4. 사업 착수시는 착수신고서를 허가청에 제출하고 지도확인증을 발급 받은후 착수 하여야 합니다.
  5. 초지조성 면적 확장은 법인단체또는 법인으로 공인할수있는 개인이 실측하여 실측도 첨부 완료신고서를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정책사업으로 책정되지않은 사업자는 자부담으로 조성 하여야 합니다.
  7. 사업추진 단계별 (착수전 전경, 감독계거, 화입, 정지 시비,파종등)사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가축입식및 부대 시설은 자력으로 하여야 합니다.
  9. 초지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수 허가자가 책임 해결하여야 합니다.
  10. 초지조성 허가 구역내에 인근 농경지로 통하는 도로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초지조성허가 기간이 끝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후에 동지역에 형질변경,공작물설치, 분묘설치,토석채취와 임목의 벌채및 반출, 타목적활용 등에 대하여는 초지법제21조의2 규정과 동법 23조규정에 의한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있어 동행위를 할수 있으며 위반시는 처벌을 받게됩니다.